

개정후 정관

정 관

사단법인 국제이에스지협회

사단법인 국제이에스지협회 대표 옥용식 (인)

이재혁 (인)

이사 김찬우 (인)

이사 박원석 (인)



사단법인 국제ESG협회 정관

2022. 08. 24. 제정

2025. 03. 07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국제ESG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표기는 “International ESG Association”이라 하며, 약칭은 “IESGA”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ESG 경영과 이와 관련된 제 분야의 학제간 연구 및 교육을 추구하고, 국내외 ESG 경영 관련 학계와 산업계 간의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통합적 학문의 발전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국가의 발전과 산업계와 연구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 ①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 ② 본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분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ESG 경영 관련 세미나, 토론회, 학술회의 개최
2. ESG 경영 관련 자체 연구 및 교육
3. ESG 경영 관련 산,관,학 협동 차원의 연구 및 교육, 정책 개발
4. ESG 경영 관련 국내 및 해외 기업, 기관,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5. ESG 경영 관련 학술지 및 연구서적 간행, 전시, 홍보
6. ESG 경영 관련 국내 및 해외 기업, 기관 연구용역 및 자문
7.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및 구분)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개인 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가입이 승인된 회원으로서 운영위원회가 정한 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정회원의 자격은 연회비 납부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정회원은 연회비 납부로 회원 자격이 갱신된다.
2. 기업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단체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중 약관과 정관에 동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가입이 승인된 단체로서, 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한 단체로 하되, 단체의 성격 및 회비 납부 금액에 따라 미래기업, 단체, 공공기관, 중소기업, 중견·대기업 그레이, 중견·대기업 퍼플, 중견·대기업 골드로 구분하고, 연회비 납부로 회원 자격이 갱신된다. (2025.03.07. 개정)

제6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하고,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기업회원은 제7조 각 호의 의무와 관련된 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2025.03.07. 개정)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납부
4. 본회 주관 행사 참석 등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협력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정회원 경우 회비납부 6개월 이상 연체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을 할 수 있다. (2025.03.07. 개정)
- ②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나 제7조의 의무를 1년 이상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2인 이하
2. 이사(회장을 포함한다) 50인 이하
3. 감사 2인 이하

제10조(임원의 선임)

- ① 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기타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으로서의 자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제13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법인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회장이 2인인 경우에는 각자 본회를 대표하고, 법인 업무를 통할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의 감사
 2.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 요구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의 진술

제15조(직무대행)

- ①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의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이사 중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해당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구분 및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단, 제14조 제1항 후문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2인인 경우에는 2인 공동명의로 총회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2025. 03. 07 개정)
-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일로부터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정회원 중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소집 요구일로부터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본회의 목적과 관련된 중요사항

제20조(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을 위임받은 자는 총회 개최 전까지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2025. 03. 07 개정)

제21조(총회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본회 회원 중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이사회 구분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단, 제14조 제1항 후문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2인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이사회를 소집한다.
- ② 이사회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자피함**으로써 소집 요구일로부터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선출한다.

제25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규정의 승인 및 변경
4. 예산안 및 결산 작성에 관한 사항
5.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회원 가입 및 회비에 관한 사항. 단, 제28조에 따라 운영위원가 본 사항에 대해 결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결의하기로 의결한 경우에 한함.
9.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정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응답자를 출석자로 간주한다.

제27조(서면결의)

-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서면결의는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장 각종 위원회 및 기구

제28조(운영위원회)

- ① 본회는 본회의 업무에 관한 원활한 의사결정과 그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제25조 제3호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운영위원회는 회장, 이사 중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3. 회장은 필요에 의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 및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운영위원회는 제2호에서 구성된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5. 온라인 회의 혹은 전자서면으로 소집 및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2025. 03. 07 신설)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단체(법인) 회원의 가입승인 (2025. 03. 07 신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와 같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수입금)

- ① 본회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총당한다.
 1. 회비

2. 특별회비
3. 토론회 및 세미나 참가비
4. 학술지 게재비
5. 연구 및 교육 용역비
6. 기부금 및 찬조금
7.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
8. 기타 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2025.03.07. 개정)

② 본회의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가 되도록 한다. (2025.03.07. 개정)

③ 본회의 기부금 및 활용실적을 법인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2025.03.07. 개정)

제32조(회비부과 및 징수)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4조(예산편성)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5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회의비 등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사무부서

제38조(사무국)

-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약간명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9장 보 칙

제39조(법인해산)

-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0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3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

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22. 8. 24.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회계연도)

제33조의 회계연도와 관련하여, 본회가 창립한 해의 회계연도는 창립총회가 있는 날로부터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발기인 옥용식 (인)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려대로 17가길 64, 104동 702호

생년월일 : 1975. 11. 19.

발기인 이재혁 (인)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신안동진아파트 106동 1301호

생년월일 : 1965. 1. 12.

발기인 이정기 (인)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56-1806 영동주택 2동 302호

생년월일 : 1987. 7. 29.

2025. 03. 07

